



제3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

[김동훈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6. 3.

**자치행정위원회**

#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

##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 김동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같은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2. 제안이유

- 남양주시민 누구나 디지털 환경에 차별 없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체계적인 디지털 포용 정책을 구축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 정보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나.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5조)
- 다. 민간의 정책 참여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7조)
- 라. 디지털역량 함양활동 및 교육 지원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마. 디지털취약계층의 취업 및 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바.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사. 디지털취약계층의 복지 연계 서비스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 아.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를 폐지(부칙 안 제2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다. 관련부서 : 정보통신과

라. 입법예고 : 2026. 3. 5.(목) ~ 2026. 3. 10.(화)(5일간) /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포용 정책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3년 단위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4조~제5조), 디지털취약계층의 역량강화 교육과 사회활동 지원, 복지·보건·고용 등 관련 서비스와의 연계 및 종합상담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및 제11조)하고 있음.  
또한 본 조례 제정에 따라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본 제정안은 「디지털포용법」의 시행 취지에 부합하여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활용 역량 제고를 통해 시민의 기본적인 정보접근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목적,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상위법과의 저촉이나 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디지털포용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① 정부는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포용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및 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체수단의 보장 및 제공에 관한 사항
6.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서비스·제품 등의 개발·보급·표준화·수출지원
7. 디지털포용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8. 디지털포용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9. 디지털포용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10. 디지털포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11. 지능정보기술 부작용의 예방·해소
12. 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13. 디지털포용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운영
14. 디지털포용을 위한 교육·상담 및 홍보
15. 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디지털포용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제출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시행계획을 점검·분석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인간의 존엄·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비밀을 보장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활용이 인류의 공동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폐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써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3. “신(新) 디지털 정보격차”란 모바일 정보기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간극(divide)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 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화 교육 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정보취약계층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

② 시장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사업
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무상 지원 사업

3. 농어촌지역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신(新)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디지털 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임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 구체적인 실행과제와 연차별 이행계획 등은 3년 주기로 수립하는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수립 이후 파악이 가능하여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비용추계가 곤란함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정보통신과장 표용자